

2025년 전체

# 최신 원산지검증 동향

2026. 3.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원산지검증과

# CONTENTS

<b>I.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b> .....	1
가. 전체 검증요청 현황 .....	1
나. 협정·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	2
다. 검증요청 사유 .....	2
<b>II.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b> .....	3
가. 한-튀르키예 FTA .....	3
나. 한-EU FTA .....	4
다. 한-인도 CEPA .....	5
라. 한-아세안 FTA .....	6
마. 한-중국 FTA .....	7
바. 기타 FTA .....	8
사. 비특혜 원산지검증 .....	8
<b>III. 미국 수출물품 자체 검증 동향</b> .....	9
<b>IV.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위반 정보</b>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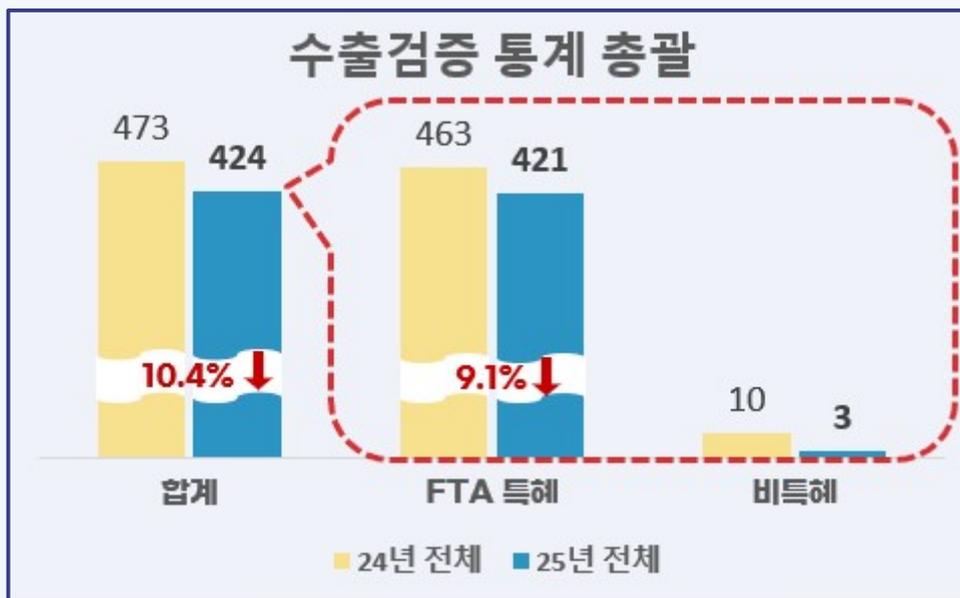
## ['25년도 전체) 수출입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 ✓ 본 자료 중 「I.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II.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내용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건에 한정된 정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 가 전체 검증요청 현황

(단위 : 업체수)



- **[FTA 검증]** 2025년 우리나라에서 FTA를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한 협정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약 9.1%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연간 400개 이상의 수출 업체에 대해 검증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비특혜 검증]** 2025년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비특혜 검증요청 건수는 10건에서 3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나 협정·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단위 : 업체수)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년 대비	
FTA 특혜 등	튀르키예	492	229	198	338	340	0.6%
	EU	50	71	68	71	45	▲ 36.6%
	인도	147	30	18	14	11	▲ 21.4%
	아세안	14	23	16	13	9	▲ 30.8%
	중국	7	6	12	12	9	▲ 25.0%
	기타*	4	4	6	15	7	▲ 53.3%
비특혜	16	6	5	10	3	▲ 70.0%	
<b>합 계</b>	<b>730</b>	<b>369</b>	<b>323</b>	<b>473</b>	<b>424</b>	<b>▲ 10.4%</b>	

\* 한-영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RCEP

- **[FTA 검증]** 2025년에도 여전히 튀르키예, EU, 인도에서의 검증요청이 집중되었습니다. 튀르키예 검증요청 건수는 전년 수준이나, 나머지 국가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 다 검증요청 사유



- **[요청사유]** 2025년에는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이유로 상대국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 각 FTA 특성에 따라 협정별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 검증 대응 시 「Ⅱ.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II.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 가 한-튀르키예 FTA



- **[현황]** 2025년도 기준, 발효된 협정 중 한-튀르키예 FTA에 따른 수출검증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요청건수 중 약 80.2% 차지)
- **[품목]** 섬유류(직물 등) > 화학공업제품(화장품 등) > 기계류(공작기계)
- **[요청사유]** 튀르키예 당국은 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②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 [주요 사례]

##### □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발행

→ 한-튀르키예 FTA 규정상 편물 제품은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생산되어야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수출업체는 중국산 원사(HS 5402)를 사용하여 원산지결정기준(Yarn-Forward)을 불충족함에도 원산지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발행

☞ FTA 관세특례법 제44조 제2항 제1호 위반

#### ○ [튀르키예 수출 시 유의사항]

- ✓ 튀르키예로부터 대부분 한국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로 섬유류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출물품이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했는지 체크하고, 원산지신고서 작성 시 해당 수출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부정하게 발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 나 한-EU FTA

- **[현황]** 2025년에는 독일·스페인·핀란드로부터의 요청 건수가 많았으며, 27개 회원국 중 15개 국가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체 요청건수 중 약 10.6% 차지)
- **[품목]** 기계류(자동차부품 등) > 섬유류(편직의류 등) > 화학제품(화장품 등)
- **[요청사유]** EU 각국의 관세당국은 주로 ①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와 ② 한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검증 사유가 무작위(Random)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주요 사례]**

📌

❑ 품목별 인증수출자로서 미인증품목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발행

→ B사는 a품목과 b품목에 대해서만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인증받았으나, 인증받지 않은 다른 c품목(원산지 기준은 충족)을 수출하면서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부적정 작성 내역 일체를 관할세관 및 계약상대국 수입자에게 수정통보하여 FTA 관세특례법 제4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미처벌

### ○ [EU 수출 시 유의사항]

- ✓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 외에도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 여부를 중점 확인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인증서를 통해 인증 자격을 확인하시고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다 한-인도 CEPA

- **[현황]** 인도 당국의 검증요청 건수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품목]** 화학공업제품(합성수지) > 전자전기제품(냉장고)
- **[요청사유]** 인도 관세당국은 주로 우리나라 물품의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인도 수출 시 유의사항]**
  - ✓ 인도 당국은 ‘조합기준’ 중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도 수출 시 부가가치 계산 관련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을 위한 지침]

1. 대한민국-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KINCEPA)에 의한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한 당사국은 대한민국과 인도이다.
  2. 조건 : KINCEPA의 특혜관세 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상기 어느 한 쪽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 가. 수입당사국의 양허받을 자격이 있는 품명과 일치 하여야 한다.
    - 나.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5조(직접운송)에 따른 운송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 다. KINCEPA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원산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는 이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 해당 원산지 기준을 아래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원산지 기준	제10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4조 제1항나호를 충족하는 상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CC / CTH / CTSH" 원산지 충족을 위해 필요한 "RVC X%" 예: "RVC 35%"
- 세번변경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CC / CTH / CTSH" 또는 "RVC X%" "CC / CTH / CTSH" + "RVC X%"
- 특정공정 - 기타	"SP" "Others"
(라) 제3장(원산지 규정)의 제3.14조를 충족하는 상품	"OP"
  4. 각 물품이 요건을 충족할 것 : 운송되는 모든 상품은 각 개별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크기가 다른 유사한 물품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에도 그러하다.
  5. 품명 : 상품의 명세서는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 가능하도록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6.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번호는 상품의 6단위로 한다.
  7. 담당자 기재란 :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특혜관세대우 부여 여부를 원산지증명서의 제5란에 표시한다.
  8. 비고 : 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하는 경우, 제6란에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인증된 진본일 경우, 제6란에 "진정등본"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9. 제3국 송장발행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기재한다.
- 주 : 이 지침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한 참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뒷면에 복사되거나 인쇄될 필요는 없다.

## 라 한-아세안 FTA



- **[현황]** 2025년 아세안 관세 당국의 검증요청은 총 10개 국가 중 주로 태국·베트남으로부터 요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 **[품목]** 화학공업제품 (화장품 등) > 플라스틱제품 > 과실류 등
- **[요청사유]** 아세안 회원국은 ①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 또는 ②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주요 사례]**

□ AK원산지증명서 상 제3국 상업송장 정보 누락 발급

→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에서 발급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13란에 제3국 송장을 표시하고, 송장 발행 회사 정보를 제7란에 기재 하여야 하나 발급신청 시 누락 ⇨ C/O 정정발급 후 재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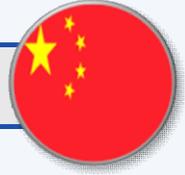
### ※ [참고 - 한-아세안 FTA 활용 시 제3국 송장 관련 규정]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의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안 제21조

1.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계정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과 같은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마 한-중국 FTA



- **[현황]** 2025년 중국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12건 → 9건) 감소하였습니다.
- **[품목]** 철강제품(냉연강판) } 기계류(광학기기부품 등) } 화학제품
- **[요청사유]** 원산지증명서 상 HS코드와 중국 수입통관 시 HS 코드가 상이하여 중국 측 HS코드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주요 사례]**

### □ 원산지증명서 상 운송정보 기재 오류

→ 수출자는 정상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나, 원산지증명서 제4항의 운송 정보 중 출항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에 따라 C/O와 운송 서류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중국 관세당국에서 검증 요청 (☞) 한-중 FTA 협정문 제3.21조(사소한 불일치 및 오류)에 해당하여 C/O 정정 발급 및 수입자에게 통보

### ○ [중국 수출 시 유의사항]

- ✓ HS코드 상이에 따른 이유로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사전에 중국 측 HS코드로도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더불어,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 상 내용 불일치, 오탈자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C/O 발급 시 기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기타 FTA

- **[현황]** 2025년 상위 5개 협정 외에 한-영국 FTA, 한-베트남 FTA, 한-콜롬비아 FTA, RCEP(일본) 협정 상대국에서도 수출검증 요청이 왔습니다.
- **[요청사유]** 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였습니다.
- **[수출 시 유의사항]**
  - ✓ 주요 검증 요청국뿐 아니라 다른 협정 당사국에서도 지속적인 원산지검증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FTA를 활용하는 수출 기업은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비특혜 원산지검증

- **[현황]** 2025년에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검증** 요청은 튀르키예, EU 국가로부터 주로 접수되었습니다.
- **[품목]** 튀르키예 **섬유류**(단섬유직물·편직물), EU **철강금속제품**(열연강판)
- **[요청사유]** 수출물품의 한국산 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였습니다.
- **[수출 시 유의사항]**
  - ✓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EU 등에서 꾸준히 비특혜 원산지검증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각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Ⅲ. 미국 수출물품 자체 검증 동향



### 한-미 FTA 관련 원산지 점검 결과 공유



- **[배경]** 미국의 원산지 조사 강화에 대비하여 대미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위험성이 높은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한-미 FTA 규정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 결과]** 대부분 수출업체가 적정하게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부 수출자의 경우 FTA 규정 및 대외무역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사례]** 주요 위반 사례 유형

- ① 중국산 완성품을 수입하여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한국산으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 ② 중국산 원재료를 수입하여 조립 등 단순 가공으로 원산지 기준이 불충족함에도 한국산으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 ③ FTA 원산지 증명서는 발급하지 않았으나, 수출물품에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으로 대외무역법 위반

### ○ **[미국 수출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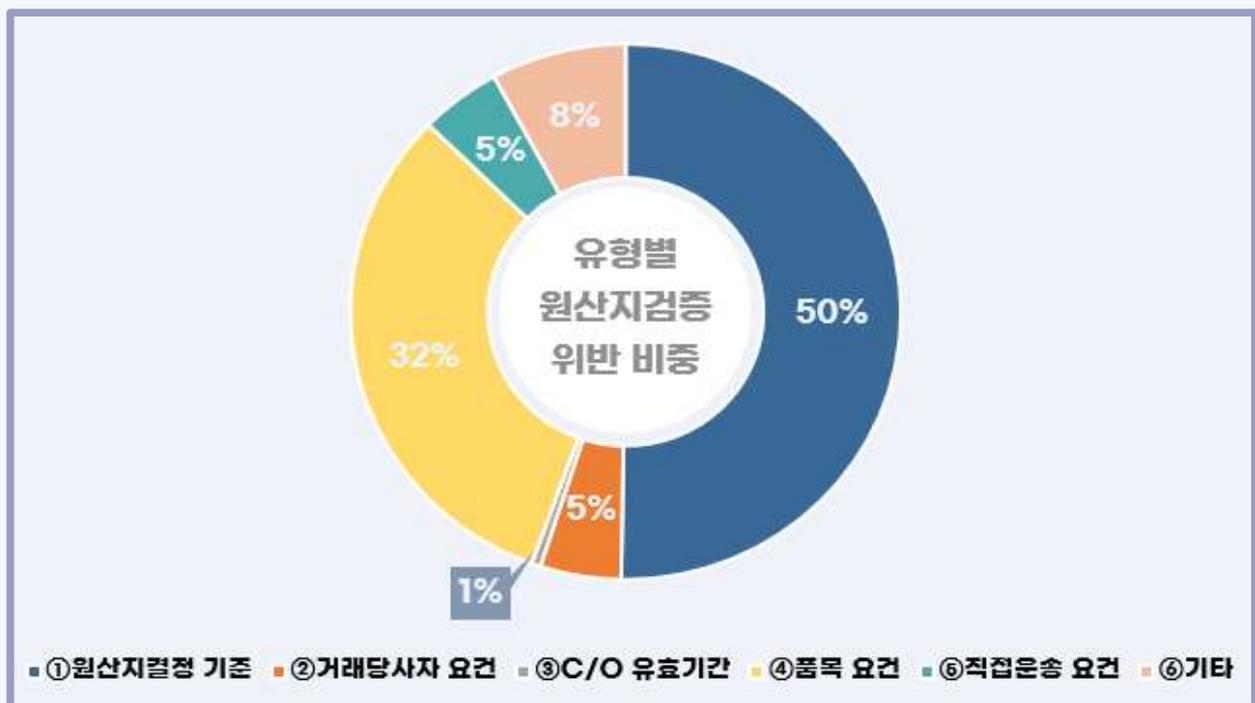
- ✓ 2026년에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산지 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IV. 수입물품 원산지검증 위반 정보

### 가 협정별 주요 위반 품목

협정	품목	위반사유
한-EFTA	제약용 원료(2939.26)	품목분류 오류
한-아세안	글리세린(1520.00)	검증결과 미회신
한-인도	다이아몬드(7102.39)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한-EU	혼합 주스(2009.90)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한-미국	연료전지(8503.00)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한-튀르키예	해바라기씨유(1512.19)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한-캐나다	오메가-3(2106.9)	원산지결정기준 위반
한-중국	산업용 계전기(8536.41)	품목분류 오류
한-RCEP	끈달린 구두(6403.99)	품목분류 오류

### 나 유형별 위반 현황



\* ②거래당사자 요건 : 미인증수출자 및 비당사국(제3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 ⑥기타 : 자료제출 거부 또는 자료보관 위반, 상대국의 미회신, 원산지증명서 위·변조 등